



시보는 광운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선 람	기관의 장



제24호(호외) 2022. 6. 28.(화)

공 고

광양시 공고 제2022-1322호 광양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회 관																			
--------	--	--	--	--	--	--	--	--	--	--	--	--	--	--	--	--	--	--	--

▶ 발행 : 광양시 ▶ 편집 : 홍보소통실 (☎797-2323, 행정2713)

광양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광양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광양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6월 27일

광 양 시 장

1. 자치법규명 : 광양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2. 개정이유

-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광양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를 전부개정하여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 및 시민의 복리증진 등의 사업에도 상품권을 지급할 수 있도록 명시함으로써 지역공동체 강화에 이바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상품권의 유통지역 (안 제4조)
- 상품권의 발행 (안 제5조)
- 판매대행점의 협약 등 (안 제6조)
- 가맹점의 등록, 자격요건, 취소, 이용 활성화 (안 제7조~안 제10조)
- 상품권의 발행 및 위탁 운영 (안 제11조)
- 상품권의 잔액 환급 (안 제12조)
- 상품권 재발급 (안 제13조)
- 위원회 설치 및 구성, 임기, 기능, 운영 (안 제14조~안 제17조)

- 부정유통 신고포상제 (안 제18조)
- 환수 조치 (안 제19조)

4. 의견제출

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22년 7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록한 의견서를 광양시장(참조: 지역경제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 1) 주 소 : 우편 57785 / 전라남도 광양시 시청로 33
광양시청 지역경제과
- 2) 담당부서 : 지역경제과(지역경제팀)
(전화 : 061-797-2351, 2350, FAX : 061-797-2583)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FAX, 시 홈페이지, 직접방문 등

의견제출서

- 성명(단체명) :
- 주소 :
- 연락처 :
- 자치법규명 :

조례안 내용	의견	비고

광양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상품권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지역공동체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지역사랑 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이하 “법” 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광양사랑상품권(이하 “상품권” 이라 한다)의 발행 및 운영,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 등에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유통지역) 상품권의 유통지역은 광양시(이하 “시”라 한다)의 관할 구역으로 한다. 다만, 광양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4조 제3항의 단서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 외의 지역에 대해서도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발행할 수 있다.

제5조(상품권의 발행) ① 광양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유가증권,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선불카드 형태의 상품권을 발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상품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위조·변조 등 부정 발행을 방지하기 위해 「한국조폐공사법」에 따른 한국조폐공사 등 전문 기관과 제조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③ 상품권의 유효기간은 발행일부터 5년으로 한다. 다만, 시장은 법 제4조 제2항의 단서에 따라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상품권의 유효기간을 단축 또는 연장하여 발행할 수 있다.

④ 법 제4조 제4항에 따라 상품권의 종류는 카드형(전자적방식의 발행을 포함한다) 및 모바일로 하고 권면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권면금액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1. 1만원권
2. 5만원권

3. 10만원권
4. 30만원권
5. 50만원
6. 전자화폐(카드형, 모바일 등)

⑤ 상품권의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상품권의 발행권자
2. 상품권의 발행일 및 유효기간
3. 상품권의 판매대행점 및 가맹점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시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제6조(판매대행점과의 협약 등) ① 시장은 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상품권의 보관·판매·환전 등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협약기간
2. 의무이행 사항
3. 그 밖에 환전 한도, 판매 및 환전 수수료 등 상품권 판매대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법 제6조 제2항에 따라 판매대행점에 관한 정보를 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③ 판매대행점은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상품권의 판매량, 재고량, 회수량 등의 업무실적을 매월 정산하여 다음달 10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상품권의 관리시스템(상품권의 입고·판매·회수 및 폐기 등 상품권에 관한 업무를 전반적으로 관리하는 체계를 말한다. 이하“시스템”이라 한다)에 유통 내용을 매일 처리하여 시장이 시스템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에는 제출한 것으로 본다.

제7조(가맹점의 등록) ① 가맹점이 되려는 자는 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업소의 소재지, 업종 등의 정보를 포함한 가맹점 등록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등록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가맹점 등록증을 교부해야 한다.

③ 법 제7조 제2항 제3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등록 제한업종”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제8호 다목 및 라목에 따른 단란주점영업과 유흥주점영업
2.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 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대규모 점포와 준대규모 점포, 다만, 대규모 점포 및 준대규모 점포 내에 입점해 있으면서 별도 법인으로 설립 운영되고 있는 지역농업협동조합 하나로마트, 지역원예농업협동조합 로컬푸드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그 밖에 시장이 지역공동체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업종
 - ④ 가맹점이 소재지 등 등록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시장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그 변경 사실을 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할 수 있다.
 - ⑤ 가맹점이 폐업 또는 6개월 이상의 휴업 등의 사유로 가맹점 등록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등록을 해지하려는 날로부터 14일 전 까지 시장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지체 없이 등록의 해지 사실을 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제8조(가맹점의 자격 요건) 법 제7조제4항에 따른 가맹점은 다음 각 호의 자격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1. 시의 관할 구역 내에 소재한 사업장일 것
2.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한 자일 것

제9조(가맹점 등록의 취소) 시장은 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가맹점의 등록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제10조(상품권 이용 활성화) ① 시장은 주민, 공무원, 공공기관 임직원 등에게 지급하는 각종 장려금, 포상금 및 시상금 등의 일부를 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상품권 유통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상품권 할인(캐시백) 판매의 경우 법 제15조 제2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10이내를 말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100분의 5이내를 추가 할인 할 수 있으며, 추가할인 기간은 할인개시 후 1개월 이내로 한다.
2. 상품권을 개인이 구매하는 경우에는 그 구매금액이 월 100만원, 연1,2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단, 할인금액은 상품권 결제 후 캐시백 형태로 지원한다.

③ 시장은 상품권 할인 판매에 따른 손실금액, 상품권 판매 및 환전 수수료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상품권 발행 및 운영 위탁) ① 시장은 법 제18조 제1항에 따라 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 한다.

1. 상품권 발행·유통 시스템의 운영에 관한 업무
2. 상품권 발행·유통 시스템의 유지·보수에 관한 업무
3. 그 밖에 시장이 상품권 발행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② 위탁의 절차 및 판매대행점에 대한 지휘·감독 등에 대하여는 「광양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12조(상품권의 잔액 환급) 법 제3조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80을 말한다.

제13조(상품권의 재발급) 상품권의 소지자는 법 제12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상품권이 훼손되는 등의 사유로 그 금액 또는 수량 등이 불명확한 경우에는 시장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확인된 금액 또는 수량 만큼에 상응하는 상품권으로 재발급 받을 수 있다.

제14조(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시장은 상품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광양사랑상품권운영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상품권 업무 소관 실·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위촉한다.

1. 광양시시의회에서 추천한 사람
2. 소상공인 지원 관련 공공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3. 주민, 가맹점, 판매대행점 대표
4. 지역상품권 분야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회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았을 경우

2. 건강 등 개인적인 사정으로 스스로 해촉을 원할 경우
3. 그 밖에 위원으로서 계속 활동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제15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위원은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결원에 의하여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6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 한다.

1. 상품권 발행 및 유통 활성화에 관한 사항
2. 가맹점의 등록 기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7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는 경우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8조(부정유통 신고포상제) ① 시장은 상품권의 부정 유통방지를 위하여 법 제8조 제1항 제1호 또는 법 제10조 제1항 제1호를 위반한 가맹점을 신고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신고한 내용이 위반 사실의 직접적인 근거가 아닌 경우나 신고자와 신고 대상 가맹점이 이해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 포상금은 상품권으로 지급하며, 그 지급한도는 1인당 10만원, 연 50만원으로 한다.

제19조(환수 조치) 시장은 가맹점 또는 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해야 한다.

1. 가맹점이 법 제10조 제1항 제2호 가목을 위반한 경우 : 제10조 제3항에 따라 보전받은 금액
2. 사용자가 법 제11조를 위반한 경우 : 제10조 제2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할인받은 금액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판매대행점 및 가맹점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판매대행점 협약을 체결한 자는 제4조 제1항의 개정 규정에 따라 협약을 체결한 자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가맹점 등록을 한 자는 제5조 제1항의 개정 규정에 따라 등록한 자로 본다.